

국제우주여행클럽 회칙(정관)

(ISTC. international space travel club)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 이 협회는 국제우주여행클럽 (이하 '협회'라 한다)라 한다.

제 2 조(목적) 이 협회는 우주산업관련업체 및 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활동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사무소의 소재지)

이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강남에 본부를 두고 각 시에 지부를 둔다.

제 4 조(사업)

이 협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우주산업관련업체 및 단체와의 상호발전을 위한 활동과 우주교육등을 한다.
2. 협회발전을 위한 활동과 발전을 위해 워크숍 및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.
3. 회원 간의 정보와 친목을 도모한다.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(회원의 자격)

- ① 이 협회의 회원은 제 2 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.
- ② 이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 한다.

제 6 조(회원의 권리)

- ①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② 회원은 이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
제 7 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1.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
2. 총회의 결의 사항 이행
3.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

제 8 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 3 장 임 원

제 9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_2인
3. 사무총장 _1인
4. 감사 _1인

제 10 조(임원의 선임)

-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_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 12 조(임원의 직무)

-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④ 사무총장은 협회의 사무(총무, 재무, 기타업무)일체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는다.
- ⑤ 감사는 협회의 재정 및 총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 13 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이 협회의 최고의 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14 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년 1 회로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, 또는 회원 2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제 15 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 사항

제 16 조(의결정족수)

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장 재산과 회계

제 17 조(재원)

이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, 가입금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 18 조(회계년도)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19 조(예산편성 및 결산)

- ① 협회는 회계연도 2 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20 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21 조(임원의 보수)
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22 조(수익배분) 협회의 수익은 개인에게 배분하지 않는다.

제 6 장 사무부서

제 23 조(사무국)

-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24 조(사무실) 사무실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3길 33 번지에 둔다.

제 7 장 보 칙

제 25 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6 조(해산)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7 조(잔여재산의 처리) 협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
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 3 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이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회칙을 작성하고 다음
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2021년 10월 30일

국제우주여행클럽

(ISTC. international space travel club)

